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목적]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노인성 질병이 있는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의 1~5등급의 인정서를 발급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2조 [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이용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해당제도·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

제3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이용자 본인 또는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한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이용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기관장인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계약방법 및 이용절차]

① 이용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 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소·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제5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기관장이 정하되 사회 통념으 벗어나서는 안 된다.
-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일반 대상자 : 15% , 의료 대상자 : 6% , 경감 대상자 : 6%또는 9% , 기초생활수급자 : 0%

-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②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분 류	금액(원)
30분이상	17,450
60분이상	25,320
90분이상	34,120
120분이상	43,430
150분이상	50,640
180분이상	57,020
210분이상	63,530
240분이상	70,080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요일, 시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산할 수 있다.

급여제공시간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및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①항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②항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 방문차량급여이용이 필요한 경우 연계가능

제6조 [급여내용]

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방문요양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센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보기, 호장하기, 필요물품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갈아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겹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머리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화장실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산책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유지·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정서 지원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 · 편지 · 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외출시 동행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일상업무 대행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 · 관공서 업무 대행 등
식사준비	수급자를 위한 식 · 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 · 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정리 등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옷장 · 서랍장 등 정리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로,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2. 방문목욕

세부내용	
욕조준비, 목욕준비, 목욕하기, 주변정리, 목욕전후의 건강상태 확인 등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인수방법) 신원인수 방법은 이용자의 가정(거주지)에 한한다.
2. (신원인수원의 권리)
 - ① 받게 되는 급여의 내용 및 범위를 받을 권리
 - ② 급여 내용을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
 - ③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④ 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성, 연령, 종료, 정치적 신념, 장애, 경제상태 등을 이유로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 ⑤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⑥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3.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 제공
- ② 급여제공기관과 체결된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③ 급여제공기관의 직원에 대한 존중
- ④ 직원에게 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관리 책임
- ⑤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

제8조 [기관의 의무 및 권리]

기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기관의 의무

- ① 서비스 제공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에 대한 의무
- ②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해당 사유와 함께 안내하는 것에 대한 의무
-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하는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의 의무
- ④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요양기술교육 실시의 의무
- ⑤ 이용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통한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의 안전성 제공을 위한 노력의 의무

기관의 권리

- ①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할 권리
- ② 서비스를 시행하고 공단과 이요자로부터 정해진 비용을 받을 권리
- ③ 국민의 권리 및 이익의 침해를 구제받을 권리

제9조 [급여이용 절차]

급여이용 실시 절차와 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① 이용자와 관한 변경 전에 사회복지사 및 관리자는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급여제공에 관한 욕구조사 및 건강기능상태를 점검하여 급여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재 파악 한다.
- ② 이용자의 욕구, 현재의 곤란한 상태를 파악하여 이용자의 급여계획을 변경하되, 이용자와 그 가족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한다.
- ③ 건강보험공단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급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급여 횟수, 급여일정을 결정한다.
- ④ 급여제공자는 수행한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이용자의 건강기능 상태의 지속적인 기록을 통하여 건강상태를 관릴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 [이용료 및 비용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서비스 시간 및 이용 횟수에 대해 이용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단, 급여이용한도 및 인정시간 범위내서 변경이 가능하나 이용한도를 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5.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급여 시간 및 횟수 변경으로 인한 비용이 변경되어 감산이 이뤄진 경우 환급

이나 익월 이용료에서 상계하여 정산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이용자(보호자)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 [이용료 납부]

-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카톡알림,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계약해지]

-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